

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10. 20.(목) 09:2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서면회의 결과 확인

- 제56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, 제57차 서면회의 결과, <보고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- 가. 개인정보 유·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58-208~212)

- 「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동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제1항,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제2호·제3호·제4호 등을 위반한 (주)강원심층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처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,
- 동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 등을 위반한 (주)강원심층수에 2,500만원, (주)대교에듀피아에 2,500만원, 서울소프트에 500만원, 아시아나항공(주)에 1,000만원, 에스이십사(주)에 1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(주)대교에듀피아에 2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58-213~217)

- 주민등록번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, 「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동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제1항을 위반한 루켄로프트(유) 등 4개 사업자와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을 위반한 케이제이정보통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처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,
- 동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제1항을 위반한 루켄로프트(유), (주)여행박사(주), 톨로이미지(주)에 대해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동법 제23조의2제1항과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을 위반한 케이제이정보통신에 대해 2,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6-58-218)

- 2014년에 최초 허가를 받은 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- 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, 재허가 여부 결정 등을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58-219)

- 방송법상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비율을 규정하고,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정하고,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동 고시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㉞ 보고사항

가.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·변경허가·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해 재허가 심사사항을 반영한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는 재허가 기준상의 「별표」를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나. 「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재송신 관련 제도에 대해 기존 연구 등 논의·검토를 통해 재송신 분쟁 최소화를 위해 협상절차 등을 포함한 「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을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원안대로 접수함

㉟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10월 24일(목)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57)